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4-51호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인천의 전통 문화유산 계승을 위하여 시지정문화재를 보존 전승하여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하는 한편
- 나. 문화재 주변 시민의 평등한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 다.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 관리를 강화하여 우리 시의 유·무형 문화재의 가치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수정 (안 제27조제2항)

- 별표 참조

나. 군수·구청장의 관내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규정 마련
(안 제27조제4항)

다. 현상변경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기준 초과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에 대한 적용 규정 마련(안 제27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ysi33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또한 새롭게 지정되는 시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1. 시지정문화재 중 별표1의 가에 속하는 건조물, 비, 묘, 수목 등의 경

우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지점에서 50m 이내의 지역으로 하며, 강화군 및 옹진군의 경우 100m 이내 지역. 단, 50~200미터 이내에서 10층 이상의 건축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는 경우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지정문화재 중 별표1의 나에 속하는 산성, 돈대, 고인돌군 등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지점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행하는 군수·구청장은 인·허가를 하기 전에”를 “건설공사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로 하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들어야 한다.”를 “들어야 한다(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문화재위원회의 현장조사로 갈음한다)”로 하고, 제8항 중 “제3항, 제4항부터”를 “제3항부터”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제27조 관련)

1. 비, 묘, 건조물 군 : 50미터(강화군·옹진군 지역은 100미터) 이내

연번	종 류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행정구역
1	유 형	1	인천도호부청사	남 구
2	유 형	2	부평도호부청사	계양구
3	유 형	6	논현포대	남동구
4	유 형	7	구)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	중 구
5	유 형	8	인천우체국	중 구
6	유 형	11	인천향교	남 구
7	유 형	12	부평향교	계양구
8	유 형	15	용궁사	중 구
9	유 형	16	인천창영초등학교(구)교사	동 구
10	유 형	17	구)제물포구락부	중 구
11	유 형	18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동 구
12	유 형	19	구)일본제58은행인천지점	중 구
13	유 형	20	용흥궁	강화군
14	유 형	21	충렬사	강화군
15	유 형	24	연미정	강화군
16	유 형	25	강화유수부 동헌	강화군
17	유 형	26	강화유수부 이방청	강화군
18	유 형	27	보문사 석실	강화군
19	유 형	28	교동향교	강화군
20	유 형	30	강화 석수문	강화군
21	유 형	32	심즁신도비	서 구
22	유 형	34	강화향교	강화군
23	유 형	38	적석사 사적비	강화군
24	유 형	39	영화초등학교본관동	동 구
25	유 형	40	팔미도등대	중 구
26	유 형	41	강화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강화군

연번	종 류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행정구역
27	유 형	49	홍예문	중 구
28	유 형	50	구)인천일본제18은행지점	중 구
29	유 형	51	내동 성공회성당	중 구
30	유 형	52	강화 온수리 성공회 성당	강화군
31	유 형	60	강화 술정리 고씨가옥	강화군
32	기념물	2	화도진지	동 구
33	기념물	3	김재로묘	남동구
34	기념물	4	이운생·강씨 정려문	남 구
35	기념물	5	류사눌묘	서 구
36	기념물	6	조서강묘	서 구
37	기념물	7	조정만묘	남동구
38	기념물	8	능허대지	연수구
39	기념물	9	용궁사 / 용궁사느티나무	중 구
40	기념물	11	계산동은행나무	계양구
41	기념물	12	장수동은행나무	남동구
42	기념물	13	양주성금속비	중 구
43	기념물	15	이규보 묘	강화군
44	기념물	24	천제암궁지	강화군
45	기념물	25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	강화군
46	기념물	26	허유전 묘	강화군
47	기념물	27	강화 인산리 석실분	강화군
48	기념물	28	강화 능내리 석실분	강화군
49	기념물	29	이건창 묘	강화군
50	기념물	30	이건창 생가	강화군
51	기념물	35	김상용 순절비	강화군
52	기념물	36	양헌수 승전비	강화군
53	기념물	43	영신군이이묘	계양구
54	기념물	49	강화 통제영학당지	강화군

연번	종 류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행정구역
55	기념물	50	이여발묘	남동구
56	기념물	51	청 · 일조계지계단	중 구
57	기념물	52	이찰 · 이율형제정려	계양구
58	기념물	53	이선봉묘역	계양구
59	기념물	54	한백륜묘역	서 구
60	기념물	55	삼목도선사주거지	중 구
61	기념물	56	정제두 묘	강화군
62	기념물	57	김안정 묘 출토묘비	서 구
63	기념물	58	허암 정희량 유허지	서 구
64	기념물	59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서 구
65	기념물	60	의령남씨종중묘역	서 구
66	기념물	61	평산신씨 종중묘역	서 구
67	기념물	62	월성박씨종중묘역	남동구
68	기념물	63	이승훈 묘	남동구
69	민속문화재	2	용동큰우물	중 구
70	문자	1	육은지	계양구
71	문화재자료	3	어사대	계양구
72	문자	5	원인재	연수구
73	문자	8	철종외가	강화군
74	문자	9	원충사지	강화군
75	문자	13	참성단 중수비	강화군
76	문자	14	강화 서도 중앙교회	강화군
77	문자	16	남북동 조병수가옥	중 구
78	문자	19	장도포대지	남동구
79	문자	23	송현배수지 제수변실	동 구
80	문자	25	김취려 묘	강화군

나. 포대, 산성, 돈대, 고인돌 군 : 200미터 이내

연번	종 류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행정구역
1	유 형	33	후애돈대	강화군
2	유 형	35	삼암돈대	강화군
3	유 형	36	분오리돈대	강화군
4	기념물	10	계양산성	계양구
5	기념물	16	강화 내가오상리 고인돌	강화군
6	기념물	18	봉천대	강화군
7	기념물	19	장곶돈대	강화군
8	기념물	20	강화전성	강화군
9	기념물	22	계룡돈대	강화군
10	기념물	23	교동읍성	강화군
11	기념물	31	강화 대산리 지석묘	강화군
12	기념물	32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	강화군
13	기념물	33	검단대곡동지석묘군	서 구
14	기념물	37	망양 돈대	강화군
15	기념물	38	건평 돈대	강화군
16	기념물	39	굴암 돈대	강화군
17	기념물	40	미루지 돈대	강화군
18	기념물	41	북일곶 돈대	강화군
19	기념물	42	용진진	강화군
20	기념물	44	강화 부근리고인돌군	강화군
21	기념물	45	강화 삼거리고인돌군	강화군
22	기념물	46	강화 고천리고인돌군	강화군
23	기념물	47	강화 오상리고인돌군	강화군
24	기념물	48	강화 교산리고인돌군	강화군
25	문자	10	선수돈대	강화군
26	문자	11	망월돈대	강화군
27	문자	17	화도돈대	강화군
28	문자	18	무태돈대	강화군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 ① <생략> ② <u>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재별로 별도로 구체적</u>	제27조(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u>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또한 새롭게 지정되는 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u>

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지점에서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지점에서 500미터 이내의 지역

3. 제1호·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문화재 지정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

1. 시지정문화재 중 별표1의 가에 속하는 건조물, 비, 묘, 수목 등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지점에서 50m 이내의 지역으로 하며, 강화군 및 옹진군의 경우 100m 이내 지역. 단, 50~200미터 이내에서 10층 이상의 건축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는 경우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지정문화재 중 별표1의 나에 속하는 산성, 돈대, 고인돌군 등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지점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

③ <현행과 같음>

④ -----
----- 건설공사에 대하여 군

허가를 행하는 군수·구청장은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6. <생략>

- ⑤ 군수·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위 여부를 검토하는 경
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
서는 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속 기관이 시
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

1.~4. <생략>

⑥~⑦ <생략>

- ⑧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지
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
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
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
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 제4항부터 제5
항까지는 검토를 생략한다.

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

1.~6. <현행과 같음>

- ⑤ -----

----- 들어야
한다.(현상변경허용기준이 고시
된 지역에서는 문화재위원회의
현장조사로 같음한다.) -----

1.~4.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 ⑧ -----

----- 제3항부터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문화재보호법】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27조제5항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에 해당됨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